

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0052호 (2021. 01. 25.)



산업통상자원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‘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’ 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 공고하였다.

❖ 개정 내용

- (주요 내용) 현재 규제중인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신규 물질(DIBP) 1종을 추가 지정하였다.

[현행]

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
<중 략>

3.1.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

항목	허용치	비고
DEHP	총 합 0.1% 이하	Di-(2-ethylhexyl) phthalate, CAS No. 117-81-7
DBP		Dibutyl phthalate, CAS No. 84-74-2
BBP		Benzyl butyl phthalate, CAS No. 85-68-7
DINP		Diisononyl phthalate, CAS No. 28553-12-0 또는 68515-48-0
DIDP		Diisodecyl phthalate, CAS No. 26761-40-0 또는 68515-49-1
DnOP		Di-n-octyl phthalate, CAS No. 117-84-0

비고 합성수지제(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)에 적용한다.

[개정(안)]

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

<중 략>

3.1.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

항목	허용치	비고
DEHP	총 합 0.1% 이하	Di-(2-ethylhexyl) phthalate, CAS No. 117-81-7
DBP		Dibutyl phthalate, CAS No. 84-74-2
BBP		Benzyl butyl phthalate, CAS No. 85-68-7
DINP		Diisononyl phthalate, CAS No. 28553-12-0 또는 68515-48-0
DIDP		Diisodecyl phthalate, CAS No. 26761-40-0 또는 68515-49-1
DnOP		Di-n-octyl phthalate, CAS No. 117-84-0
DIBP		Diisobutyl phthalate, CAS No. 84-69-5

비고 합성수지제(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)에 적용한다.

- (적용 시기) 2021. 3. 28.까지 의견 수렴하여 5~6월 중 개정고시 후 약 3~6개월 유예기간 적용 예정이다. (시행일 8~11월 중 예상)